제338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2016년1월8일(금) 오후 3시

의사일정

1.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대안)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석진) 추천안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공공외교법안(대안)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1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된 안건

1.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3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석진) 추천안(의장 제의) ····· 3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4
4.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4
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원유철・류지영・이진복・이운룡・홍문표・송광호・김성태・김태흠・이강후 의원 발의) ····· 5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원유철・류지영・이진복・이운룡・홍문표・박맹우・송광호・김성태・김태흠 의원 발의) ····· 5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
9.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
1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서상기・송영근・양창영・강석훈・유의동・이재영・박명재・민병주・홍일표 의원 발의) ····· 6
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7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7
14. 공공외교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7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
16.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
1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
1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9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9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9
2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o 5분자유발언 ····· 10

(15시58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6일 원유철 의원 외 155인으로부터 제339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1월 9일부터 집회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장정은 의원 대표발의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심윤조 의원 외 154인으로부터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심재권 의원, 이종걸 의원 외 116인으로부터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등 5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의사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의 남은 숙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마는 국회의원선거구는 8일째 효력을 상실한 채로 있습니다. 또 민생과 경제를 살릴 중요한 법안들도 처리되고 있지 못합니다.

새해 들어 대외적인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한반도의 안보상황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 작은 당파적 이익에 매달려서 우리 국가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자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야는 서로가 제안한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한 달간의 회기와 무관하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문제를 풀어내어야 합니다.

19대 국회의 남은 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시01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나경원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 나경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심재권·이종걸 의원, 원유철·심윤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결의안을 초당적 관점에서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핵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위하여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 당국 간 대화와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및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정착을 위하여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이 결의안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북핵 불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대안)은 부록으로 부존함)

○의장 정의화 나경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석진) 추천안(의장 제의)

(16시05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석진)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인이 결원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서 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제의한 것입니다.

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전자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 정용기 의원, 김관영 의원, 김민기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을 누르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6시07분 투표개시)

○의장 정의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6시23분 투표종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이백십……

우선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 안으로 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석진)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9표 중 가 143표, 부 67표, 기권 9표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석진)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6시25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용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김용남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용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이개호 의원, 전해철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권위원의 자격기준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판사·검사·변호사,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였고, 인권위원 중 특정 성, 남성이나 여성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김용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8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6시27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4항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서영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울특별시 ‘가운데 중(中), 물결 랑(浪)’ 중랑갑 출신 국민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입니다.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증보험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장치 등을 미이행한 법무사에 대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두 번째 우윤근·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 무능력자가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4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원유철·류지영·이진복·이운룡·홍문표·송광호·김성태·김태흠·이강후 의원 발의)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원유철·류지영·이진복·이운룡·홍문표·박맹우·송광호·김성태·김태흠 의원 발의)

(16시30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6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유의동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대포통장의 불법 양수·양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후 해당 계좌 채권에 관한 소송 제기, 가압류 신청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피해금 환급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유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8인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9.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서상기·송영근·양창영·강석훈·유의동·이재영·박명재·민병주·홍일표 의원 발의)

(16시33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8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박민식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대리 박민식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설치 의무를 보강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원자력산업 실태조사를 수탁하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접광고 판매 주체 및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대상에 외주 제작사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박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6시37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2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태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태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10년 이상 재직교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초등학교 2학년 자녀로 확대하며 남성도 3년 이내의 범위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공개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부모와 함께 국내에 체류할 여건이 안되는 외국인 학생이 학업을 위해 국내에 체류할 경우 및 귀화자의 자녀 가운데 일반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외국인학교 입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둘째 외국인학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여 부정입학에 연루될 경우 시정·변경 명령 없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히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김태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1인, 기권 4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4. 공공외교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시41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4항 공공외교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대리 심재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공공외교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본 의원과 김관영 의원, 이재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공공외교법안은 공공외교에 관한 국가적 전략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제를 구축하며, 공공외교 활동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외교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제도화하여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심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외교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기권 3인으로서 공공외교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6.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6시43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5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윤옥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철수 의원, 최동익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정림 의원과 김성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김춘진 의원, 김제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박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7인, 기권 3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47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9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함진규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시흥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태원·김성태·이우현·주승용·신기남·양승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는 것으로서, 공공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확인 및 계약의 추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주기적인 신고 및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폐지하고 공제조합 분리설립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태흠·김경협·이언주·김상희·정성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는 것으로서, 감리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위반 유형에 따라 건축 관계자에게 업무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함진규 의원, 김경협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는 것으로서, 지정개발자의 범위 및 지정 요건을 확대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일괄 수납하는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을 도입하고 통행료의 수납을 위하여 차량의 영상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전부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함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서 건

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5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4인, 기권 5인으로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o 5분자유발언

(16시53분)

○의장 정의화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입니다.

보육대란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뒷짐만 진 채 교육청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 의원이 아니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결과 지금 수년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와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일반 지자체와 함께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을 만들면서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그 금액이 올해에만 2조 1000억 원가량 됩니다.

국가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때는, 첫째로 법률로 근거를 갖추고, 둘째로 반드시 예산을 함께 배정해 줘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서도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두도록 했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기관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가의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하거나 이양할 경우 재정적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이 중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만으로 강제로 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청 재정 상황은 역대 최악입니다. 지난해 49조 5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 5000억에 불과했고, 2012년 2조 원이었던 지방교육채는 3년 만에 10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14조 4000억 원이 됩니다. BTL 포함하면 총예산의 40%가 부채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70%가 인건비입니다. 이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가 90%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용재원 약 5조 원 중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이 2조 원으로 40%가 넘습니

다. 이로 인해 교육청들은 학교기본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와 같은 필수 교육비용들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1조 3000억 원이나 됩니다. 어린 학생들이 회복할 수 없는 교육 기회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은 안 내놓고 교육청 협박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하자는 교육감들에게 협박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국정과제입니다.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2013년 1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후보자 시절인 2012년 11월 말에는 KBS 토론에서 무상보육에 대한 진정성을 묻는 방청객 질문에 대해 '정치를 해 오면서 실천하지 못할 약속을 한 적은 없다. 약속한 것은 정치생명을 걸고 지켜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든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생명을 걸었으면 그에 합당한 실천을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시급히 여당, 야당 그리고 정부 관계 부처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합니다.

민생을 우선에 둔 건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태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산청·함양·거창 출신 신성범 의원입니다.

저 역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김태년 의원님의 많은 말씀에 일정 부분 동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에서 많은 말씀을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좁혀진 문제는 양쪽의,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부 입장은 '법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누리과정 예산 4조여 원을 100% 편성해서 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그 돈을 다른 사업에 더 배정했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는 주장인 반면 교육감님들 입장은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데 4조 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다' 또한 일부에서 주장한 대로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국비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크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제가 볼 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는 우선 질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냐 보육이냐? 법적 책임이 어디 있느냐? 영유아보육법이냐 유아교육법이냐, 누가 부담할 거냐? 중앙정부냐 지방이냐, 교육부냐 시·도교육청이냐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질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들을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 돈이냐 지방교육청 돈이냐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게 대표적인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교육감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일단 배정할 부분은 먼저 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의논해서 지원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같은 국민세금을 갖다가 호주머니만 다른 건데 이것을 니 돈 내 돈, 중앙정부 호주머니 지방교육청 호주머니 이렇게 싸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방교육청의 여력이 얼마나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김태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감님들께서 굉장히 어렵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모릅니다. 이것은 재정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내역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미 보육대란은 앞에 닥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것은 방법은 일단은 보육대란을 막자는 데 적어도 정부나 여당·야당이 다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면 부족한 돈이라도 일단 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육대란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의회, 광역의회에서 누리과정 도입 때부터 아무 문제 없이 추진되던 유치원 예산까지 제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도의회에서 보면 어린이집 예산 제로, 빵원, 0원, 유치원 예산 0원, '빵빵'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보육대란을 결국은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굉장히 부추기거나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후보 공약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국가 책임을 말씀하셨고, 3~5세까지의 보육예산의 중앙정부 부담을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지원을 늘리자 하는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돌아가 보면,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야당 대통령후보께서는 또한 0~5세까지 모든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는 사실도 저는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집권했더라면 우리는 다 약속 지켰을 거라고 하신다면 저희들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까지도 어려워서 600조가 넘는 국채를 발행하는 이 마당에 교육감님들은 전부 다 자기들 원하시는 사업, 자기들이 편한 사업, 이렇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100% 다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약이니까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라고 하시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급한 대로 배정된 예산을 편성해서 보육대란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막고 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육과 유아의 통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보통합을 포함한 그런 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신성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후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두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다시피 보육대란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누리과정 예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중하순이나 다음 달부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의 어린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거리는 그런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긴급처방을 강구해도 모자랄 지금 정부는 엉뚱한 일만 저질러서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제소한다느니, 감사원 감사를 한다느니 운운하면서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재판이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육대란으로 발생할 혼란을 국민에게 가만히 앉아서 감수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어린이집은 시·도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더러 어린이집 지원까지 계속 떠안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만입니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만큼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형식으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라고 하지만 교부금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쓰도록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적 행위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이런 위법행위를 강요할 수 있습니까?

누리과정은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입니다. 국가완전책임제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금처럼 어린이를 볼모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누리과정 정책을 발표하던 2011년, 정부의 호언장담이 어땠습니까? '교부금이 매년 3조 원씩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교육청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다'라고 당시 이주호 장관, 호언장담했습

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말은 거짓이었지 않습니까? 교부금이 3조 원씩 늘어나기는커녕 재작년에는 1000억 원, 작년에는 1조 50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1조 8000억 원 증가한다고 하지만 당초 공언했던 3조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재정여건이 나쁜 가운데 누리과정을 시행하다 보니 시·도교육청은 빚만 늘었습니다. 2012년 누리과정 시작할 때 지방교육채가 2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10조 9000억 원, 3년 만에 5배로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14조 8000억 원으로 7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 예측과 달리 돈은 들어오지 않고 누리과정은 부담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교육청은 빚더미에 빠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누리과정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장래가 걸려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정작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고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뿐입니다. 돈이 없어 빚이 늘어나고 있는 교육청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일뿐입니다. 해결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지자체와 다투기만 할 뿐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단 하나, 자명한 일입니다. 중앙정부 예비비를 투입하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해서 급한 불을 꺼야 합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의 조속한 완료를 통해서 법적·재정적 미비점을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52.5%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보육대란은 민생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내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 특별기구를 통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정진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議員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세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의 상설화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는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계속되던 2013년 6월에 구성되어 지금까지 다섯 번의 활동기간 연장을 거치며 지난 12월 말에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기·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매주 금요일 아침 8시에 회의를 정례화하며 업무보고 총 20회, 공청회 총 30회 등 총 46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며 그 외에 독도 자료 전시회, 상고사 대토론회 등의 행사를 포함하면 총 5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며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특위 활동을 펼쳐 왔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 6개월 동안 특위 활동을 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위안부 문제, 조선인 강제노역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 등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망언·망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비교적 최근 시작된 백두산공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심어 놓은 식민사관이 여전히 학계와 역사연구기관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것이 식민사학이고 역사적 실체인지의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함부로 재단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를 검증하여 역사적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학설이 제기될 때 기존 학계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된 토의와 논쟁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독도영유권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일본의 법령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얼마 전 한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2차 대전 종전 이후 상당 기간 총 31

개의 일본 법령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뒤늦게 대부분을 폐지 또는 개정하기는 했으나 이 중 3개 법령은 아직도 시행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일본 공사관에 근무하던 한 젊은 일본 영사의 비밀서신을 통해서 일본군 소위가 명성황후를 시해했다는 유력한 정황을 발굴해 낸 연구를 특위 회의를 통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처럼 일개 낭인, 즉 건달이나 깡패들이 난입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 현역 장교가 의도적으로 대한제국의 황후를 시해한 것이라면 이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행으로 역사책을 새로 써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지금의 학계와 역사연구기관은 이를 검증하고 활용하는 데 너무나 소극적이고 배타적이었습니다. 특위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독촉해야 겨우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특위는 출범 이후부터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식민사관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새로운 자료와 연구를 소개하고 활용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기존의 학설과 다른 소수의 학설이라도 경청하려고 노력했고 다양한 주장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특위는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역사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며, 논의가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종교적 색채로 변질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객관적이고도 학문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특위의 노력을 통해 학계와 역사연구기관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지만 2년 6개월의 활동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9대 국회에서 특위 활동이 종료된다면 그나마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다시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임기응변식 단편적 대응으로 사안이 생길 때만 구성되는 특위가 아니라 국회 차원의 중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특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동북아역사특위를 상설 특위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동 개정안을 통과시켜 20대 국회에서는 상설화된 동북아역사특위가 중심이 되어 산재해 있는 역사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기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독단과 무책임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주의 제일 원칙인 타협과 대화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 국민대통합을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그 공약들 다 어디 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제일 먼저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포기했습니다. 국민통합이 아니라 네 편, 내 편 편 가르기로 국민 분열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개악에 올인하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노동개악법을 경제활성화법, 쟁점법안으로 둔갑시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여의도 지점으로 전락했다는 국민의 질타가 높습니다. 대통령이 입법부를 좌지우지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이심에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고 무책임과 무능 뒤에 숨는 식물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논란, 노동법 논란, 여야의 첨예한 쟁점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과반 이상을 차지한 집권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에 국회가 할 일을 못 하고 있다,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민심을 왜곡하고 사표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불공정한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선거법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닮은 정치개혁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상황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지역구 확대, 비례대표 축소를 주구장창 외치고 요지부동입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상안에도 반대, 국회의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의 협상안도 반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도 반대, 오로지 반대, 반대, 반대만 외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제도를 바꾸면 과반 다수당이 될 수 없다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위헌적 상황에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새누리당에 묻겠습니다.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악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갑질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을 대변하는 비례성을 높여 의회민주주의를 한층 발전시키는 선거제도로 개혁하시겠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위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선거구 획정을 위해 원내정당 대표회담을 지금 당장 열 것을 제안합니다. 새누리당은 성실하게 응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6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 느닷없이 쟁점 법안과 20대 총선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안과 협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의당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끌려가는 졸속협상일 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테이블의 한 축이고 국민을 위해서 새롭게, 신나게 선용할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할 제1야당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끝까지 분투하셔야 합니다.

양당정치 혁파를 말하면서 이를 떠받치는 승자독식 제도를 바꾸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정치세력은 새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을 위해서 야권은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진심으로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제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7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류성걸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원석	박윤옥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인자 황진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85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정림 민병두
민병주 박광온 박남춘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최규성
최봉홍 최원식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진하

반대 의원(4인)

김도읍 이철우 정갑윤 주호영

기권 의원(8인)

박민식 서용교 심재철 여상규
이주영 이한성 조명철 진성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201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정림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덕흠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봉홍 최원식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동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4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정림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덕흠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봉홍

최원식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진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8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정림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덕흠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봉홍 최원식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진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8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정림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덕흠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진하

(장정은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8인, 기권 의원 없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정림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진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7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정림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강길부 장하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정림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기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6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정림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강창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4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문정림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최봉홍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진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1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문정림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수현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진하

기권 의원(4인)

김상민 서기호 이노근 정진후

○공공외교법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문정림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 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최봉홍 추미애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진하

기권 의원(3인)

박창식 이상일 주호영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7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문정림 민병두 민현주
박남춘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 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천정배
최민희 최봉홍 추미애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강기윤 김용남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20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 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천정배 최민희 최봉홍 추미애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7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 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천정배 최민희 최봉홍 추미애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기권 의원(3인)

강기윤 김재원 신경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202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설 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천정배 최민희 최봉홍 추미애
하태경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기권 의원(1인)

민홍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20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 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천정배	최민희	최봉홍
추미애	하태경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진성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7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문정림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설 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천정배 최민희
최봉홍 추미애 하태경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김기준 서용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6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설 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성준 천정배 최민희 추미애
하태경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진하

반대 의원(2인)

김제남 정진후

기권 의원(3인)

서기호 서용교 이종훈

(이재영 의원석 표결기 오작동. 실제 투표 의원 201인, 찬성 의원 196인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4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문정림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 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천정배
최민희 최봉홍 추미애 하태경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진하

기권 의원(5인)

김기준 배덕광 이종훈 이현재
홍익표

○출석 의원(24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 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천정배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인자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209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류성걸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원석	박윤옥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인자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24인)

강은희	길정우	김민기	김제남
김춘진	김한표	김　현	남인순
박원석	서기호	서영교	신경림
양승조	염동열	유인태	이종걸
이학영	임수경	전병헌	전순옥
정의화	정진후	진성준	하태경

○청가 의원(21인)

權垠希	김성곤	김용익	노철래
박범계	박완주	박지원	안철수
유일호	이목희	이병석	이원욱
이정현	이춘석	임내현	장윤석
전정희	최경환	최동익	홍의락

황 우 여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박 형 준
의 사 국 장	장 대 섭

○출석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법 무 부 장 관	김 현 웅
보건복지부장관	정 진 엽
국토교통부장관	강 호 인

○출석 정부위원

교 육 부 차 관	이 영
외교부제1차관	임 성 남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 재 홍
금 융 위 원 장	임 종 룡

【보고사항】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김한길	더불어민주당	탈당	2016. 1. 3

○의안 제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5. 12. 31 유재중·김명연·배덕광·김정록·장정은·이종배·박인숙·류지영·박성호·김세연·안홍준 의원 발의)

2016년 1월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5. 12. 31 유재중·김명연·배덕광·김정록·장정은·김세연·이종배·박인숙·류지영·박성호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5. 12. 31 김태년·설훈·배재정·도종환·최동익·조정식·박광온·윤재옥·장병완·박주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2016년 1월 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 12. 31 유승희·이종걸 의원 외 117인 발의)

2016년 1월 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12. 31 정부 제출)

2016년 1월 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015. 12. 31 송영근·장정은·김을동·강석훈·최봉홍·황영철·권성동·김세연·정갑윤·정희수 의원 발의)

2016년 1월 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5. 12. 31 김우남·이개호·부좌현·김영록·홍문표·유성엽·신정훈·박민수·신기남·김춘진 의원 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대표발의)

(2015. 12. 31 김제식·이운룡·김희국·염동열·함진규·강기윤·김정록·손인춘·이종진·장정은 의원 발의)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5. 12. 31 김우남·이개호·부좌현·김영록·홍문표·유성엽·신정훈·박민수·신기남·김춘진 의원 발의)

이상 3건 2016년 1월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5. 12. 31 경대수·유승우·이이재·이한성·류지영·박명재·신성범·박덕흠·양창영·이인제 의원 발의)

2016년 1월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5. 12. 31 김기선·김명연·권성동·김태원·전하진·정문헌·정용기·심윤조·염동열·이운룡 의원 발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은 의원 대표발의)

(2015. 12. 31 장정은·길정우·홍지만·유의동·유재중·송영근·류지영·이정현·김정록·안홍준 의원 발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

(2015. 12. 31 신경림·박윤옥·안홍준·최동익·김관영·이명수·이학재·정미경·장정은·정성호·김춘진 의원 발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

(2015. 12. 31 신경림·박윤옥·안홍준·최동익·김관영·이명수·이학재·정미경·장정은·정성호·김춘진 의원 발의)

이상 4건 2016년 1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15. 12. 31 박대출·김명연·김태흠·강기윤·김태환·김세연·정수성·김재경·정갑윤·김희국·윤재옥 의원 발의)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5. 12. 31 하태경·김세연·김태원·박덕흠·배덕광·유재중·이노근·이인제·이학재·함진규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5. 12. 31 하태경·이노근·이인제·함진규·손인춘·이완영·박명재·박대동·정갑윤·정희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2016년 1월 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6. 1. 4 이노근·정희수·김태원·강석호·이헌승·함진규·이종진·안효대·한기호·손인춘·유일호·윤명희 의원 발의)

1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2016. 1. 4 정용기·송영근·류지영·김광림·김태원·윤명희·이한성·황주홍·장윤석·박성호 의원 발의)

1월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2016. 1. 5 신의진·유승우·김명연·홍문종·류지영·유의동·김태환·이노근·이완영·이재영 의원 발의)

1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16. 1. 5 유의동·류지영·원유철·송영근·이노근·홍지만·신의진·김을동·강기윤·이채익 의원 발의)

1월 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6. 1. 5 하태경·강석훈·김영우·김정훈·김태원·나성린·류성걸·류지영·박인숙·서용교·송영근·이노근·이완영·이우현·이자스민·이재영·이헌승·장윤석·정갑윤·주영순 의원 발의)

1월 6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1. 5 정부 제출)

1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2015. 1. 5 신의진·유승우·김명연·홍문종·류지영·유의동·김태환·이노근·이완영·이재영 의원 발의)

1월 6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이민사회기본법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2016. 1. 6 이자스민·양창영·최봉홍·홍문표·이에리사·진영·손인춘·윤명희·주영순·이병석·조명철·한선교·함진규·김광림 의원 발의)

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6. 1. 6 박명재·강석호·장윤석·이학재·이강후·강석훈·이완영·이노근·박인숙·전하진 의원 발의)

1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2016. 1. 6 정호준·김현·부좌현·전순옥·윤관석·신경민·이개호·박홍근·김민기·주승용 의원 발의)

1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6. 1. 6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6. 1. 7 김을동·나성린·이명수·박맹우·신동우·김도읍·손인춘·송영근·이운룡·유의동 의원 발의)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 1. 7 심재권·이종걸 의원 외 116인 발의)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016. 1. 7 원유철·심윤조 의원 외 154인 발의)
이상 2건 1월 7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대안)
(2016. 1. 7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
(2016. 1. 7 국방위원장 제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6. 1. 7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석진) 추천안
(2016. 1. 7 의장 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6. 1. 8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6. 1. 8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6. 1. 8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6. 1. 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공공외교법안(대안)
(2016. 1. 8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16. 1. 8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6. 1. 8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5 이개호·김경협·유승희·황주홍·서기호·박홍근·박남춘·배재정·이학영·김윤덕·강창일·김성곤·김우남·김성주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전해철·박남춘·정청래·신경민·황주홍·최동익·윤관석·이목희·민홍철·우윤근·박수현·김성곤·신기남·이해찬·김우남·김광진·이춘석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10. 7 정부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0 함진규·하태경·김광림·이학재·주영순·이헌승·이우현·이노근·박성호·강동원 의원 발의)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국회운영위원장 보고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11. 10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5. 2. 13 박민수·이개호·김우남·강창일·신경민·부좌현·박남춘·이춘석·이종배·양승조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15. 2. 13 우윤근·신정훈·박광온·이춘석·주승용·홍종학·서영교·강창일·백재현·오영식·김영록·안규백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7. 28 정부 제출)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15. 3. 12 유의동·원유철·류지영·이진복·이운룡·홍문표·송광호·김성태·김태흠·이강후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15. 3. 12 유의동·원유철·류지영·이진복·이운룡·홍문표·박맹우·송광호·김성태·김태흠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정무위원장 보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5. 10. 29 류지영·서상기·송영근·양창영·강석훈·유의동·이재영·박명재·민병주·홍일표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
(2013. 2. 18 박창식·이우현·김태환·이만우·김성곤·최봉홍·박성호·강은희·홍지만·이재영·이한성·이진복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이개호·서기호·조정식·이학영·김윤덕·강창일·김성곤·김우남·장병완·부좌현·박민수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15. 3. 12 유의동·원유철·류지영·이진복·이운룡·홍문표·박맹우·송광호·김성태·김태흠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15. 4. 2 우상호·이인영·최원식·박홍근·진선미·인재근·유은혜·조정식·이개호·정성호·남인순·김기준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5. 20 정부 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이개호·장병완·김윤덕·도종환·이학영·정호준·조정식·김성곤·심재권·원혜영·이찬열·부좌현·강기정·김영록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2015. 9. 23 정호준·김민기·장병완·강기정·주승용·전순옥·김영록·배재정·이찬열·박홍근·이개호·전병헌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15. 10. 29 우상호·홍종학·김광진·박민수·황주홍·신경민·정청래·최원식·이개호·안규백 의원 발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이개호·장병완·김윤덕·도종환·이학영·정호준·조정식·김성곤·심재권·원혜영·이찬열·부좌현·강기정·김영록 의원 발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5. 8. 21 최원식·서영교·윤후덕·유성엽·이찬열·권은희·유승희·민홍철·전해철·이춘석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
(2012. 7. 18 박창식·김을동·민현주·김태환·김명연·최봉홍·박성호·이우현·김재원·서용교·김현숙·이진복·이만우·이재영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1. 30 정부 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3. 3. 26 최민희·배재정·윤관석·진선미·김윤덕·유성엽·배기운·윤후덕·박완주·박수현·민홍철·신경민·한정애·임수경·서영교·조경태·추미애·전순옥·심재권·노웅래·윤호중·남인순·정진후·정청래·정성호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
(2013. 9. 26 홍문종·유승우·이한성·이만우·홍지만·손인춘·김세연·이우현·이헌승·유일호·이재영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4. 9. 30 류지영·강석훈·안홍준·송영근·김광림·배덕광·이종배·권은희·안효대·경대수·윤명희·이한성·민병주·정수성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0. 16 부좌현·박민수·백재현·서기호·김광진·임수경·김성곤·남인순·박남춘·김우남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정희수·이완영·이명수·박대동·송영근·김상훈·홍철호·박명재·김태환·서용교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10 정부 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2 우상호·한정애·안규백·이상직·이개호·조정식·도종환·장하나·배재정·

임수경·김승남 의원 발의)

(이상 1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0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2014. 5. 16 김현숙·문대성·김한표·이한성·박인숙·홍지만·정희수·김정록·안종범·정의화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014. 6. 12 유은혜·김상희·인재근·김현미·진성준·배재정·정진후·김용익·안민석·유기홍·정성호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5. 1. 23 김태년·김상희·도종환·박주선·박홍근·부좌현·설훈·안민석·유대운·윤후덕·정청래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4. 3 정부 제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2015. 8. 19 정진후·서기호·심상정·김제남·박원석·유기홍·배재정·박홍근·도종환·김태년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8 배재정·전순옥·진선미·정진후·유기홍·김윤덕·박홍근·설훈·도종환·전병헌·안민석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3. 8. 30 김세연·이만우·송영근·유승우·박인숙·서영교·홍문종·윤관석·신경림·김재원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3. 9. 13 강은희·주호영·김세연·김상훈·이강후·윤상현·김현숙·이우현·김태흠·홍지만·이노근·박성호 의원 발의)

(이상 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016. 1. 7 원유철·심윤조 의원 외 154인 발의)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 1. 7 심재권·이종걸 의원 외 116인 발의)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2. 8. 7 김관영·한정애·유대운·김윤덕·안규백·장병완·김동철·김춘진·조정식·전정희·이석현·원혜영·민홍철·이미경·홍종학·유기준·김영환·배기운·강은희·신학용 의원 발의)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李宰榮 의원 대표발의)

(2012. 8. 17 李宰榮·이재영·이만우·함진규·김한표·손인춘·김을동·김정훈·김정록·이에리사 의원 발의)

공공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3. 2. 4 심재권·원혜영·배기운·인재근·김형태·전순옥·박혜자·이인영·유성엽·유기홍 의원 발의)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

(2013. 5. 21 김정록·주영순·이진복·이한성·김현숙·이만우·손인춘·김을동·송영근·윤명희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13. 8. 27 김성주·김영록·양승조·이학영·박홍근·최동익·정진후·박수현·이원욱·신장용·이춘석·은수미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9 안철수·임수경·양승조·조정식·장하나·최동익·전순옥·오제세·문병호·윤후덕·윤관석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4. 5. 27 이언주·정성호·장하나·김광진·부좌현·변재일·김재윤·유성엽·김상희·남인순·설훈·김영환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2014. 6. 19 김용익·양승조·김성주·이미경·이춘석·박홍근·윤호중·남인순·이목희·이언주·배재정·이학영·유은혜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4. 7. 16 최동익·안홍준·오제세·부좌현·김경협·김기준·전순옥·이상직·이목희·안규백·전정희·김상희·김기식·김성곤·김태년·김승남·이해찬·김광진·김재윤·박남춘·황주홍·인재근·남인순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014. 7. 18 이목희·임수경·양승조·최동익·윤관석·최규성·홍영표·한정애·배재정·김성주·진성준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

(2014. 8. 21 신경림·전순옥·오제세·유승민·강기윤·김광진·이에리사·김정록·윤명희·이한성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9. 4 김우남·임수경·최규성·김종태·김성곤·박민수·김영록·강동원·유승우·김춘진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3. 23 정부 제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2015. 6. 11 문정림·박명재·정갑윤·홍지만·유재중·김정록·김태원·이인제·류지영·박윤옥·정문헌·강석호·정희수·경대수·조명철·김성찬 의원 발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2015. 6. 15 김현숙·이이재·손인춘·이강후·정수성·박성호·홍지만·김을동·문대성·김도읍 의원 발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15. 6. 17 김성주·박홍근·박수현·양승조·이원욱·김영환·남인순·최동익·김용익·이학영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김광진·홍종학·부좌현·이개호·양승조·김성곤·황주홍·백재현·오영식·박홍근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5. 10. 23 남인순·김상희·이찬열·김기식·김용익·김성주·윤호중·김광진·안규백·노웅래·윤후덕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1 양승조·김용익·최동익·이찬열·이개호·박홍근·박민수·김상희·조정식·전병헌 의원 발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4. 3. 3 김세연·윤명희·이주영·박창식·김태원·박대출·정갑윤·강은희·송영근·이만우·김광진 의원 발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 김제식·김정록·양승조·김기선·김성주·이종진·인재근·박윤옥·문정림·김광진 의원 발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5. 3. 17 이명수·정희수·황인자·김을동·이노근·김기선·김명연·신경림·문정림·노철래·이에리사·김태원 의원 발의)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5. 4. 1 김춘진·김윤덕·김성곤·이상직·황주홍·김우남·강창일·김경협·신정훈·박민수 의원 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5. 4. 30 김세연·정갑윤·송영근·이정현·류지영·김제식·박인숙·이완영·황인자·홍지만·이만우·윤명희·문대성·유의동·김한표·강길부·원혜영·김현·이윤석·전병헌·유인태·유성엽·도종환·우윤근·이미경·김성곤·오제세·신학용·김춘진·인재근·이목희·경대수 의원 발의)

존엄사법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5. 6. 9 신상진·이재영·김을동·이종진·김상훈·권성동·송영근·유승우·이만우·서상기·심재철·이한성 의원 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015. 7. 7 김재원·강기윤·김을동·권성동·최봉홍·정용기·이만우·김제식·박덕흠·이명수 의원 발의)

(이상 2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4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7. 27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4. 6. 9 김태원·손인춘·이만우·민현주·이명수·박인숙·정성호·이에리사·강기윤·박성호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4. 9. 23 김성태·유승우·이완영·이한성·최봉홍·박민식·양창영·권성동·서용교·김세연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2015. 2. 4 이우현·홍철호·이노근·염동열·김상민·서청원·노철래·홍지만·강기윤·유승민·강은희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5. 2. 16 김태원·이만우·한선교·유승민·이종배·이한성·강석호·박성호·김한표·박명재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5. 3. 19 주승용·김승남·김성곤·박주선·변재일·김광진·노영민·강기정·박수현·이윤석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

(2015. 4. 1 신기남·김우남·민홍철·이개호·강기정·이미경·전해철·남인순·이윤석·박수현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4. 29 양승조·설훈·박홍근·박민수·민홍철·배재정·김상희·이찬열·이목희·오제세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김태원·황주홍·이만우·강동원·이우현·김제식·심학봉·김도읍·이헌승·하태경·김희국·이장우·심재철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12. 11. 8 김태흠·최원식·조현룡·유승우·민홍철·정갑윤·신동우·강석호·이에리사·이장우·조정식·심상정·오병윤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5. 2. 17 김경협·윤후덕·이개호·윤관석·박남춘·이미경·한명숙·신경민·강은희·정성호·김상희·김광진·강동원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5. 3. 20 이언주·서영교·김상희·김영주·이개호·김승남·김성곤·김기준·최동익·송호창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김상희·최규성·주승용·이원욱·이찬열·진성준·박광온·이인영·이미경·박주선·유성엽·배재정·김경협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5. 8. 18 정성호·이찬열·강동원·김현·김경협·김관영·김윤덕·김성곤·윤관석·최규성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14. 9. 16 우상호·김승남·오제세·김광진·김성곤·전순옥·박남춘·임수경·송호창·김상희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정희수·조명철·이명수·이철우·김상훈·최봉홍·이한성·김태환·김태원·이노근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5. 5. 14 함진규·하태경·이노근·이완영·박덕흠·이재영·이우현·김태원·강석호·이상일·이장우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15. 8. 17 김희국·유승민·권은희·이완영·

박대동·길정우·주호영·서상기·강석호·김상훈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5. 9. 24 함진규·이우현·강석호·박덕흠·김태원·박성호·이학재·이장우·황영철·김희국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 이석현·노웅래·이상직·장병완·홍익표·전정희·유성엽·박완주·전해철·윤후덕·김동철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3 신상진·안상수·이노근·정미경·이한성·박상은·김을동·이종진·박성호·이학재·이헌승·하태경·함진규·강석호·김태원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4 신상진·김을동·이종진·박성호·이학재·이헌승·하태경·함진규·강석호·김태원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6 김경협·이찬열·박지원·원혜영·김상희·안규백·이춘석·배재정·이개호·윤후덕·전정희·홍영표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9 김경협·배재정·이개호·윤후덕·원혜영·전정희·홍영표·이찬열·최규성·안규백 의원 발의)

(이상 2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4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청원 제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악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

(2016. 1. 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4길 4, 2층 프린스효령빌딩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장 김주평 외 12인으로부터 김을동 의원의 소개로 제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서면질문서 제출

국회자료제출 거부에 관한 질문서

(2016. 1. 4 안민석 의원 제출)

트롤어업에 관한 질문서

(2016. 1. 5 박명재 의원 제출)

국회자료제출 거부에 관한 질문서

(2016. 1. 7 안민석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국회자료제출 거부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5. 12. 31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제339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 시	2016년 1월 9일 오전 10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안건처리 등
요 구 자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외 155인

(2016. 1. 6)